

개 정(안)

[별지 제16호 서식]

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

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

제출일 : 20 년 월 일

아래와 같이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계약청약과 동시에 부금의 통산을 신청합니다.

성 명		서명 또는 날인	주민등록번호	
주 소			연 락 처	
부금통산 승인 후 30일 내 철회할 수 있으며, 철회기간이 지난 후에 해약하는 경우 전 계약의 부금을 포함한 납부하신 부금 전액에 대해 일반해약 환급률이 적용되어 납입한 부금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				서명 또는 날인

○ 종전계약사항

계약번호		계약종료사유 발생일	20 년 월 일
------	--	------------	----------

○ 부금통산사유

해당란 √표	종전계약 종료사유	해당란 √표	신계약 사유
	[개인] 폐 업 (현물출자사업양도를 위한 폐업 포함)		[개인] 개 업 (사업양수를 포함)
	[개인] 공동사업탈퇴		[개인] 공동사업참여
	[법인] 폐 업		[법인] 대표취임
	[법인] 해 산		
	[법인] 대표퇴임		

※ 종전계약의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금통산을 할 수 없습니다.

○ 신계약 청약사항

업 종	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*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업태·종목을 기재	상시근로자 수	___명 (년 월)
매출액	직전년도 년 <input type="text"/> 백만원 직전년도-1 년 <input type="text"/> 백만원 직전년도-2 년 <input type="text"/> 백만원		* 매출 증빙 가능한 직전년도 3년간 매출액을 기재 *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예상 연매출액 기재
사업상 지위 (해당란 √표)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사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대표자	사업 체 전 화	
사업체의 명 칭	<input type="checkbox"/> 폐업·법인해산 및 대표자 퇴임의 대상인 사업체입니다.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등의 명칭 기재합니다.	사업자등록번호	<input type="text"/>
개업일자	년 월 일	법인등록번호 (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)	<input type="text"/>
사업체소재지		사업 체 FAX	
		연락처 선택 (해당란 √표)	<input type="checkbox"/> 자택주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체소재지
부금월액	※부금월액은 최저 50,000원에서 최고 10,000원 단위로 최고 1,000,000원까지이며 분기납의 경우 3개월분의 부금을 매 분기 납부합니다. * <input type="checkbox"/> 백만 <input type="checkbox"/> 십만 <input type="checkbox"/> 만 <input type="checkbox"/> 천 <input type="checkbox"/> 백 <input type="checkbox"/> 십 <input type="checkbox"/> 일	부금납부주기	<input type="checkbox"/> 월납 <input type="checkbox"/> 분기납
		부금납부기일	매월 ()일 매 분기 ()개월 ()일

- ① 부금 등 자동이체신청, ② 개인정보활용동의 여부, ③ E-메일 수신동의 여부 및 ④ SMS 수신동의 여부는 종전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부금통산 시에는 종전계약이 소멸함에 따라 통산시점의 약관과 세법이 적용됩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

- 폐 업 시 : 폐업증명서
- 공동사업탈퇴시 : 탈퇴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철회서 및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 증명서
- 법인해산시 :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
- 퇴 임 시 :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

2. 신계약의 청약서류 : ①청약자의 신분증 사본, ②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, ③사업체의 제무제표, 부가세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④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⑤법인등기부등본(사업체가 법인인 경우)